

# 산업보건 주요뉴스

## 2008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

### •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 46,350명(전년동기 대비 2,531명 증가)
- 재해율 : 0.35%(전년동기 대비 0.01%P 감소)

### •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수 : 716명(전년동기 대비 53명 증가)
- \*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누계) : 1,248명 (전년동기 대비 27명 증가)
- 사고성 사망만인율 : 0.55(전년동기 대비 0.01P 증가)
- \* 질병사망 포함 사망만인율(누계) : 0.95 (전년동기 대비 0.05P 감소)

### • 업무상 질병자수 및 질병발병률

- 업무상 질병자수 : 4,909명(전년동기 대비 1,020명 감소)
- 업무상 질병발병률 : 0.04%(전년동기 대비 0.01%P 감소)

### • 주요 사업별 재해감소 성과

- 3대 다발재해 집중관리 : 23,289명(전년 동기 대비 1,762명 증가)
- \* 전도 : 1,093명(13.7%) 증가, 추락 : 826명 (14.7%) 증가, 협착 : 157명(2.0%) 감소
-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 감독 : 재해자 307명(36.8%) · 사망자 8명(27.6%) 증가
- 클린사업 : 재해자 3명(8.6%) 증가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 재해자 1명 (14.3%) 감소
- 안전관리 국고대행사업 : 재해자 1,777명 (71.3%) · 사망자 18명(72%) 감소

## 사업장 위험기계 · 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등 28종, 제조 · 수입시 안전인증제 도입  
벤젠 · 노말헥산 등 13종 유해물질, 작업장내 노출농도 준수의무 강화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및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28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생산과정의 품질관

리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가 가능하며 석면, 벤젠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장내 노출농도 준수의

무가 보다 강화된다.

노동부는 12일 위험 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검사·검정 대상기계·기구 24종과 추가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하여 28종은 제조·설치·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능 뿐 아니라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현행 검사·검정 대상 기계·기구 중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사업장 자율관리가 가능한 14종은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품성능을 스스로 확인하여 자율안전확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현행 정기·자체검사 대상 16종 중 5종을 제외한 11종에 사출성형기를 포함한 12

종은 정기·자체검사를 통합한 「안전검사」를 사용단계에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석면, 벤젠 등 13종에 대하여는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항상 일정수준(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사업주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07. 7. 27.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복원됨에 따라 종전 제출의무 대상 10개 업종 중 제조업 평균 재해율보다 산재율이 높은 2개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연도별 산업재해율(%)】

업 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재해율	0.77	0.90	0.85	0.77	0.77
제조업 재해율	1.22	1.42	1.28	1.18	1.18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94	3.12	2.74	2.64	2.6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88	2.03	1.91	1.69	1.67

\* 구,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서 명칭변경(표준산업분류표 개정)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선정 및 추진방안 연구(2007년)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석면관리대책」 수립·시행

### - 석면노출로부터 근로자 보호 및 피해근로자 보상까지 -

노동부는 건축물 등의 해체 전에 전문조사·분석기관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석면 해체·제거 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 석면이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6종) 등이 있으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 유발.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82%), 자동차 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에 이용

※ 영국은 1979~2001년까지 석면관련 4만여 명 사망(영국 보건안전청, HSE), 미국은 1975년 이후 악성중피종으로 매년 2,500 명 사망, 향후 7만명 추가사망 예상(Occup Environ Med, 2004)

#### • 건축물·피해근로자 실태파악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사업장 건축물·시설의 석면함유실태조사(2008. 3~12)」의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장 건축물 및 시설의 건립시기·용도별 석면함유량,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 사업장 석면의 순차적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5개부처 합동 석면관리종합대책(2007. 7)에서 부처별 실태조사분야 분담(노동부/사업장, 환경부/공공시설·농어촌건물, 교육부/학교, 국방부/군부대)

또한 과거 석면 취급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석면 질환(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에 이환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석면 피해근로자 질병관리, 보상대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 석면해체·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석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등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석면함유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함유된 경우 해체 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석면함유 건축물 등은 전문업체만이 해체·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는 노동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전문인력, 장비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육성 관리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 객관적인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석면피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상
 

전·현직 근로자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를 현행 석면 제조·취급자중 3년 이상 종사 근로자에서 석면노출정도에 따라 3월~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 확대 실시한다.

※ ① 석면최고노출업무: 종사기간 3개월,  
   ② 석면고노출업무: 종사기간 1년,  
   ③ 석면저노출업무: 종사기간 10년

피해근로자의 보상을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으로 구제가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30년 이상이므로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험수급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조하여 석면 피해 인근주민과 보험비적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제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 일본의 「석면구제법」은 석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보험비 적용 근로자를 포함하여 보상

#### • 석면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모든 석면제품은 2009. 1. 1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에 석면금지 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된 석면량이 많은 사업장, 위반사례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감독관의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부는 백화점, 할인마트의 판매원, 계산원 등 근무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때때로 앓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업주는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의자비치를 하지 않거나 의자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서서 응대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건강권 요구에 소극적이며, 정부도 유해물질 중독 등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서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백화점, 대형할인점에는 약 38만 4천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판매·계산 업무 등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0만 4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요통, 하지정맥류, 무릎·발의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서비스업종인 백화점, 할인점의 사업주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정책방향 및 환경개선사례 등을 홍보하고 정책이행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소재 사업장의 대표,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산업보건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장 방문 시 관련내용을 지도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객인 국민인식 변화를 위해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전국의 산업안전전광판을 통하여 의자비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또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가이드”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관련 사업장에 보급하고,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지침”을 KOSHA Code로 제정하여 그 이행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좌식의자 구입비용의 지원 등 재정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